감사결과

1. 총 괄

감사 결과 [표 1]과 같이 총 12건(처분 13건)의 위법·부당사항과 7건의 모범사례가 확인되었으며, 지적사항별 처분사항은 [표 2]와 같다.

[표 1] 감사결과(처분·모범사례) 현황

(단위: 건)

처분합계(건)	기관주의	통보	권고	시정	모범사례	현지시정
13	1	8	3	1	7	6

[표 2] 개별 처분사항 일람표

일련번호	조치기관	지적사항	처분사항
1	울산해양경찰서	■ 방검부력 조끼 성능관리 기준 마련 필요	통보
2	울산해양경찰서	■ 해양재난구조대(드론수색대) 수당 지급 절차 개선 필요	통보
3	울산해양경찰서	■ 해상사격 시 경찰관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	통보
4	울산해양경찰서	■ 경비함정 등 크레인 안전검사 철저 필요	통보
5	울산해양경찰서	■ 경비함정 유수분리기 관리 방안 마련 필요	통보
6	울산해양경찰서	■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적극 운용 필요	권고
7	울산해양경찰서	■ 연안안전지킴이 선발 과정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	권고
8	울산해양경찰서	■ 수사중지자 등 장기 미검 사건 관리 미흡	권고
9	울산해양경찰서	■ 유출량 산정법 개선 및 현장부서 해양오염사고 대응 교육 내실화 필요	통보
10	울산해양경찰서	■ 방제과 보유 장비 관리 미흡	통보
11	울산해양경찰서	■ 회계업무 처리 미흡	통보·시정
12	울산해양경찰서	■ 비밀 접수 및 열람 미흡	기관주의

2. 주요 지적사항(요약): 총 12건

□ 방검부력조끼 성능관리 기준 마련 필요(통보)

○ **(판단근거)**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에서는 2023년부터 기능성이 강화된 신형 방검부력조끼로 교체 중으로 방검부력조끼 규격서에는 부력성능을 48시간 침지 후 부력 100N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, 부력재의 성능 유지를 위해 열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적층하여 보관을 금지하고 있음

○ **(문 제 점)** 울산해양경찰서 [a][a]함, [e][f]함, [g][h]함은 계획정비 차 정비창 입창 시 구명의·구명환·구명볼에 대한 부력검사는 실시하였으나 방검부력조끼에 대한 부력검사는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, 정비창 내 입창 함정의 구형 방검부력조끼 검사 결과 사용기간 누적 등에 따른 부력성능 저하가 불량 판정 수치로 확인되고 신형 방검부력조끼도 불량 판정 사례가 확인되는 점, 구명의·구명환·구명볼과 달리 방검부력조끼에 대한 부력검사는 일부 경비함에서만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검부력조끼에 대한 정기적인 부력검사 실시가 필요함

○ **(조치사항) 울산해양경찰서장**은 해상특수기동대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검부력조끼의 성능 유지를 위한 보관·관리상태를 점검하고, 정기적인 부력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검부력조끼 성능 관리 대책 마련**(통보)**

□ 해양재난구조대(드론수색대) 수당 지급 절차 개선 필요(통보)

○ **(판단근거)** 울산해양경찰서는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·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

하거나 동원된 해양재난구조대원 등은 출동수당, 유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, 「해양재난구조대 운영지침」[Ⅷ. 수당지급]에 해양재난구조대원 등이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·대응 활동(교육·훈련 활동 포함)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경우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한 지급 기준·절차를 규정하고 있음

○ **(문 제 점)** 드론수색대 수당 신청 시, ① 해양재난구조대원 출동수당 등 신청서, ② 드론수색대 활동자 명단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있으나 선박구조대의 V-PASS 항적 등과 달리 드론수색대에서 직접 작성·제출한 활동자 명단(활동자명, 운용장비, 횟수, 수색지, 수색시간 포함)만으로는 수색·구조·구난 활동 지원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드론 비행 로그 기록 제출 의무화 등 수당지급 절차 개선·보완이 필요

○ **(조치사항) 울산해양경찰서장**은 드론수색대의 수색·구조·구난 활동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수당 과·오 지급을 방지하도록 수당 지급 절차에 대한 개선 대책 방안 마련**(통보)**

□ 해상 사격 경찰관 보호장비 작용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(통보)

○ **(판단근거)** 「해상사격 및 안전관리 규칙」제6조에 따라 함정은 사격훈련이 계획된 주의 1주 전 화요일까지 훈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, 지방해양경찰청은 사격훈련이 계획된 주의 1주 전 수요일까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경찰서 경비함정에서는 매 회 지방청(경비과) 승인 후 정해진 해상사격 구역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

○ **(문 제 점)** 경비함정 소속 경찰관은 방탄헬멧 외에 별도의 보호장비 없이

구명조끼만 착용한 채 해상사격을 진행하고 있고, 사용 중인 방탄헬멧의 경우 내부 고정 띠는 교체하고 있으나 일부 방탄헬멧 본체는 보급 시기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실제 방탄 기능이나 충격 흡수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확인되어 총기사고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관 보호장비 보완(방탄조끼 착용 등) 및 개선이 필요함

○ **(조치사항) 울산해양경찰서장**은 해상 사격훈련 시 함정 승조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 보호 장비 확충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**(통보)**

□ 경비함정 등 크레인 안전검사 철저 필요(통보)

○ **(판단근거)** 함정 크레인 검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「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」제15조가 신설('24. 3. 28.)되었으며, 이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은「선박구명설비기준」제130조에 의거하여 함정에 설치된 고속단정 양·하강 장치 및 크레인에 대해 매 12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후 일부 개정('25.12. 5.)을 통해 매년 와이어 로프의 인장강도, 마모율, 부식 및 변형 여부를 검사하여 정비 또는 교체하도록 구체적인 검사 항목을 명시하였으며, 해양경찰정비창, 해군(정비창 및 수리장) 또는 외부 전문 검사업체를 통해 안전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 장비와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

○ **(문 제 점)** '25년에는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 주관으로 함정 6척의 크레인 7대, 전용부두 육상크레인 1대의 안전검사가 이뤄졌고, 일부 크레인에서 비상정지 장치 및 문제점 등이 확인되었으나, 수리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, 일부는 점검 시기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치가 이뤄지는 등 수리 필요 개소에

대한 보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

○ **(조치사항) 울산해양경찰서장**은 함정 승조원의 안전 및 장비손상 방지를 위해 함정 등의 크레인 정기 검사 결과에 따른 정비 이행 철저 등 크레인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**(통보)**

□ 경비함정 유수분리기 관리 방안 마련 필요(통보)

○ **(판단근거)** 2024년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에서는「폐유(선저폐수) 및 유수분리기 운용지침」을 하달하고, 유수분리기 관리 지침 준수 및 운영매뉴얼에 따른 자체정비·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

○ **(문 제 점)** 울산해경서 소속 함정 유수분리기가 설치된 12척의 함정 중 최근 3년 이내 설치된 ef함·nm호를 제외한 나머지 10척의 함정 모두 필터 교체 이력이 전혀 없었고, aa함·P-ad·P-bb 외에는 정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수분리기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

○ **(조치사항) 울산해양경찰서장**은 함정 유수분리기의 전반적인 운용 상태 점검 등 성능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**(통보)**

□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적극 운용 필요(권고)

○ **(판단근거)** ①「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」제9조(안전사고 위험예보제)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관할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·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운용해야 함 ②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안전사고

위험예보는 “관심”, “주의보”, “경보”로 규정함

○ **(문 제 점)** 해양레저객 등이 증가하는 여름철 성수기(6~9월) 기간 연안사고 발생 빈도(51%)가 높고 사망사고 또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상특보(풍랑주의보)가 발효된 기간에만 “관심” 단계의 안전사고 위험예보를 발령함

○ **(조치사항) 울산해양경찰서장**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연안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여름철 성수기 기간 위험예보를 발령하는 등 시기별 연안사고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위험예보제를 적극 운용**(권고)**

□ 연안안전지킴이 선발 과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(권고)

○ **(판단근거)** 「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」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이 권장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서 합격자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조 제7항에 의거 지원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여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
○ **(문 제 점)** 울산해양경찰서 연안안전지킴이 선발 관련(2024~2026년), 매년 연안안전지킴이 13명을 선발하여 울산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개인정보(성명)를 마스킹 처리 없이 ‘최종 합격자 명단’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됨

○ **(조치사항) 울산해양경찰서장**은 연안안전지킴이 선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합격자 성명에 대한 마스킹 처리하거나 지원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합격자 개인정보 처리 절차 정비 필요**(권고)**

□ 수사중지자 등 장기 미검 사건 관리 미흡(권고)

○ **(판단근거)** 「해양경찰수사규칙」 제101조(소재수사 등)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중지된 사건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를 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중지사건 담당자(수배사건 담당자)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수사중지자 검거를 위해 정기적인 소재수사를 실시해야 함

○ **(문 제 점)** ① 2025년 수사중지자 등 집중검거 기간(2025. 9. 1. ~ 10. 10.) 중 관리중인 수사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 등을 통한 검거를 계획하고도 수사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지 않았고, 수사중지 결정 이후 수사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지 않아 수사중지사건을 장기 미검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확인됨 ② 2025년 발생한 수사중지사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반장급이 아닌 수사지원반 경찰관(사건 서무)으로 지정·관리

○ **(조치사항) 울산해양경찰서장**은 수사중지사건 전반에 대해 점검(해외체류 수사중지자 출입국 규제 여부 등)하고, 수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직원들이 자체 계획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**(권고)**

□ 유출량 산정법 개선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 교육 내실화 필요(통보)

○ **(판단근거)** ① 유막색조법 활용 시 해양경찰청에서 발행한 “유출량 산정 사례집” 및 “해양오염사고 조사 실무안내서”에 수록된 유막색상에 따른 두께 수치를 참고하여 유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며, 수록된 유막색상에 따른 두께는 “기름오염 항공탐색 지침(ITOPF, 국제유조선선주유류오염연맹)”과 “해양

오염 방제기술서(해양경찰청)”에 근거하고 있음 ② 울산해양경찰서에서는 현장부서 대상 해양오염사고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, 오염상황 보고 시 해상 및 해안에 유출된 오염물질의 색상과 확산방향, 오염군의 길이와 폭을 정하여 오염군 내 분포도를 % 단위로 보고하도록 함

○ **(문 제 점)** ① “해양오염사고 조사 실무 안내서”에서는 유막색상을 은회색, 무지개색, 메탈색, 갈색, 검정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, 사례집 및 안내서에서는 은빛, 무지개빛, 갈색~검정색, 주황색 유막 대한 두께는 제시하면서도 메탈색 유막에 대한 두께는 언급이 없어 실무상 유막색조법 활용 유출량 산정 시 참고하는 자료로는 메탈색 유막에 대한 유출량을 산정을 할 수 없고, 단편적으로 구분된 4가지 유막색상에 따른 두께 수치 적용 시 무지개빛(0.0003㎜)과 갈색(0.1㎜) 사이 유막두께 차이가 약 333배에 달하므로 편차가 큰 무지개빛과 갈색 중간에 해당하는 메탈색 유막에 대한 두께 수치가 필요함 ② 현장부서 해양오염 관련 상황보고서에 오염범위 작성 시 오염군의 색상과 길이, 폭에 대한 기재는 있으나 분포율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보고되고 있고, 감사관 현장부서 점검 시 오염상황 보고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방제과 주관 교육이 현장부서 해양오염사고 대응 업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
○ **(조치사항) 울산해양경찰서장**은 유막색조법 활용 유출량 산정 시 유막색상에 따른 두께 추가 검토 및 유출량 산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해양오염 사고 대응 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**(통보)**

□ 방제과 보유 장비 관리 미흡(통보)

○ **(판단근거)** ①「해상화학사고 대응용 노후 기자재 관리지침」제4조에 따라 해상화학사고 대응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해상화학사고 대응용 장비·자재의 내용연수를 정하고, 제5조에 따라 장비·자재 관리카드, 관리대장의 내용연수는 지침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② 국가기술표준원의「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」제5조에 따르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측정현장에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기 위해 적용하는 측정기의 교정주기는 기기 종류에 따라 12개월~24개월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

○ **(문 제 점)** ①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와 부서별 관리카드·대장상 내용연수가 상이하고, 노후 장비자재 관리 지침에 따라 내용연수 경과 장비·자재에 대한 불용 및 신규 소요 요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② '97년 취득 이후 내용연수(12년)가 경과한 노후 장비로 최근 사용 실적('26년 사용실적 없음)이 없고, 측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교정이 필수적이나 취득 이후 검교정 실적이 없음

○ **(조치사항) 울산해양경찰서장**은 관리 지침에 따라 해상화학사고 대응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, 유량계 측정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검교정 실시 등 방제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**(통보)**

□ 회계업무(매각계약 · 특근매식비) 처리 미흡(통보·시정)

○ **(판단근거)** ①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·대부, 용역의 제공,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함 ②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Ⅲ.

비목별지침 1-5. 특근매식비(210-05목)의 지급대상자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이며, 정규근무시간(9~18시)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함

○ **(문 제 점)** ① 폐유·불용 공무용차량·선박 등의 매각계약은 세입의 원인이 되므로 계약업체로부터 매각 대가를 선납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, 총 9건의 매각계약과 관련하여 물품인계를 한 후에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됨 ② 정규근무시간 중에는 특근매식비 집행을 위한 정부구매카드를 집행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, 정규 근무시간 중에 3개 부서에서 총 7건의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

○ **(조치사항) 울산해양경찰서장**은 부적정하게 집행된 특근매식비에 대해 환수 조치 바라며**(시정)**, 소속직원의 회계 업무(계약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 등)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점검 강화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**(통보)**

□ 비밀 접수 및 열람 미흡(기관주의)

○ **(판단근거)** 「보안업무규정」 제24조에 따라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고, 「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」 제33조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수발한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라야 함

○ **(문 제 점)** 2026년 을지연습 실시 관련 비밀 접수 과정에서 ① 총 2개 부서에서 계·과장 결재 없이 1인 결재로만 처리(1개 부서)하거나, 계장 검토를 누락

(1개 부서)한 사실이 확인됨 ② 을지연습 참가자 비밀 열람 미지정(총 83명 중 33명 열람)

○ **(조치사항) 울산해양경찰서장**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 접수 및 공람 철저 바라며,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소속직원 교양교육 실시**(기관주의)**